e편한세상 봉황역 입주자모집공고 (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 - 717호(2014.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대상: e편한세상 봉황역 아파트 9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일반 유의사항

1.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년 10월 30일(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 임)입니다.
2. 당 아파트는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므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3. 당 아파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4. 2013년5월3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청약가점제 적용대상 및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고,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 특별공급이 확대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85㎡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을 75%에서 40%로 완화 함.
   -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제한이 완화되어 유주택자(1주택자 이상)에게도 청약1순위 가점제 자격을 부여 함.
   - 민영주택에 대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확대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함.
5. 당 아파트는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안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단, 향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7. 견본주택 관람안내 : 실제 견본주택에는 주택형 73㎡, 84㎡B, 84㎡C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는 주택형 59㎡A,59㎡B,59㎡C,59㎡D,84㎡A,84㎡D,84㎡E,128㎡,131㎡,145㎡,151㎡,154㎡ 형은 홈페이지, 분양 카달로그,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1. 당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2012.02.27 개정)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0)'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하여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김해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 ·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2. 당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먼저 청약통장가입은행(1,2순위) 및 청약통장 취급은행(3순위)을 통해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신 후,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www.apt2you.com), 국민은행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이용하여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3. 청약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청약자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청약신청 관련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2012.2.27 개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중 1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층을 말함)
5. 주택형 표기방식이 2009년 4월 1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 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주택청약 신청시 주택형(주거전용면적)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하신 주택형은 추후 다른 유형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6. 청약순위별(특별공급, 일반공급 1,2,3순위)청약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의 신청일정을 확인 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7. 청약접수(인터넷)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 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여 접수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당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자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어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2,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2순위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9. 특별공급(일반,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신청자일 경우에도 일반공급에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특별공급 중복신청은 불가함).

10.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신청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이중당첨자는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이 유효 함.

11. 당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 계약체결이 가능 함.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
이용대상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 신청금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계신 분(1회 이체한도가 청약 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김해시청 건축과 - 호 (2014.10.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봉황동 부봉도시개발사업구역 A1-2블럭

⦿ 대지면적 : 22,914.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2층, 지상 27~35층. 8개동, 총 93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분 305세대 포함][일반 특별공급 92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93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9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8세대]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1)공급대상

(단위: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 코드 (모델번호)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 지분	최저층 우선 배정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합계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14001205-01	59.9612A	66	59.9612	22.3814	82.3426	29.7097	112.0523	18.5877	2층: 2세대
	2014001205-02	59.9838B	64	59.9838	21.9608	81.9446	29.7209	111.6655	18.5948	2층: 2세대
	2014001205-03	59.9612C	95	59.9612	21.8544	81.8156	29.7097	111.5253	18.5877	2층: 3세대
	2014001205-04	59.9130D	34	59.9130	21.7618	81.6748	29.6858	111.3606	18.5728	1층: 1세대
	2014001205-05	73.8974	98	73.8974	26.8198	100.7172	36.6148	137.3321	22.9079	2층: 3세대
	2014001205-06	84.6798A	120	84.6798	30.7737	115.4535	41.9573	157.4108	26.2504	1층: 1세대,2층: 3세대
	2014001205-07	84.7227B	123	84.7227	29.9197	114.6424	41.9786	156.6210	26.2637	2층: 4세대
	2014001205-08	84.8249C	149	84.8249	29.3443	114.1692	42.0292	156.1984	26.2954	1층: 1세대,2층: 4세대
	2014001205-09	84.4684D	123	84.4684	30.5165	114.9849	41.8526	156.8375	26.1849	1층: 1세대,2층: 3세대
	2014001205-10	84.8333E	56	84.8333	29.6265	114.4598	42.0334	156.4932	26.2980	1층: 1세대,2층: 1세대
	2014001205-11	128.2593	1	128.2593	48.2248	176.4841	63.5502	240.0343	39.7599	
	2014001205-12	131.1781	2	131.1781	48.5019	179.6800	64.9964	244.6764	40.6647	
	2014001205-13	145.4685	2	145.4685	53.3291	198.7976	72.0770	270.8746	45.0947	
	2014001205-14	151.0444	2	151.0444	54.4838	205.5282	74.8398	280.3680	46.8232	
	2014001205-15	154.8496	1	154.8496	55.9688	210.8184	76.7252	287.5435	48.0028	

(2)공급금액

(단위: ㎡/원)

주택형	해당 라인	공급 세대수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회(10%) 2015-03-20	2회(10%) 2015-07-20	3회(10%) 2015-11-20	4회(10%) 2016-05-20	5회(10%) 2016-09-20	6회(10%) 2017-01-20	입주 지정일
59.9612A	102동2호 103동2호	66	2층	2	48,552,000	149,648,000	198,200,000	19,820,000	19,820,000	19,820,000	19,820,000	19,820,000	19,820,000	19,820,000	59,460,000
			3~4층	4	48,552,000	156,048,000	204,60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20,460,000	61,380,000
			5~9층	10	48,552,000	162,548,000	211,10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21,110,000	63,330,000
			10~34층	50	48,552,000	166,848,000	215,400,000	21,540,000	21,540,000	21,540,000	21,540,000	21,540,000	21,540,000	21,540,000	64,620,000
59.9838B	102동3호 103동3호	64	2층	2	48,570,000	148,630,000	197,200,000	19,720,000	19,720,000	19,720,000	19,720,000	19,720,000	19,720,000	19,720,000	59,160,000
			3~4층	4	48,570,000	155,030,000	203,600,000	20,360,000	20,360,000	20,360,000	20,360,000	20,360,000	20,360,000	20,360,000	61,080,000
			5~9층	10	48,570,000	161,530,000	210,10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21,010,000	63,030,000
			10~35층	48	48,570,000	165,830,000	214,40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21,440,000	64,320,000
59.9612C	101동2호 102동4호 103동4호	95	2층	3	48,552,000	148,348,000	196,90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19,690,000	59,070,000
			3~4층	6	48,552,000	154,748,000	203,300,000	20,330,000	20,330,000	20,330,000	20,330,000	20,330,000	20,330,000	20,330,000	60,990,000
			5~9층	15	48,552,000	161,148,000	209,70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20,970,000	62,910,000
			10~35층	71	48,552,000	165,448,000	214,0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21,400,000	64,200,000
59.9130D	101동3호	34	1층	1	48,513,000	141,687,000	190,200,000	19,020,000	19,020,000	19,020,000	19,020,000	19,020,000	19,020,000	19,020,000	57,060,000
			2층	1	48,513,000	148,087,000	196,60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19,660,000	58,980,000
			3~4층	2	48,513,000	154,487,000	203,0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20,300,000	60,900,000
			5~9층	5	48,513,000	160,887,000	209,40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20,940,000	62,820,000
			10~35층	25	48,513,000	165,187,000	213,70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21,370,000	64,110,000
73.8974	101동1호 102동1호 103동1호	98	2층	3	59,836,000	185,364,000	245,20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24,520,000	73,560,000
			3~4층	6	59,836,000	193,364,000	253,20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25,320,000	75,960,000
			5~9층	15	59,836,000	201,364,000	261,20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26,120,000	78,360,000
			10~34층	74	59,836,000	206,664,000	266,50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26,650,000	79,950,000
84.6798A	104동3호 105동3호 106동3호 107동3호	120	1층	1	68,567,000	199,633,000	268,20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26,820,000	80,460,000
			2층	4	68,567,000	208,633,000	277,20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27,720,000	83,160,000
			3~4층	8	68,567,000	217,733,000	286,300,000	28,630,000	28,630,000	28,630,000	28,630,000	28,630,000	28,630,000	28,630,000	85,890,000
			5~9층	20	68,567,000	226,733,000	295,30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29,530,000	88,590,000
			10~33층	87	68,567,000	232,733,000	301,30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30,130,000	90,390,000
84.7227B	104동2호 105동2호 106동2호 107동2호	123	2층	4	68,602,000	206,698,000	275,300,000	27,530,000	27,530,000	27,530,000	27,530,000	27,530,000	27,530,000	27,530,000	82,590,000
			3~4층	8	68,602,000	215,698,000	284,300,000	28,430,000	28,430,000	28,430,000	28,430,000	28,430,000	28,430,000	28,430,000	85,290,000
			5~9층	20	68,602,000	224,598,000	293,200,000	29,320,000	29,320,000	29,320,000	29,320,000	29,320,000	29,320,000	29,320,000	87,960,000
			10~33층	91	68,602,000	230,598,000	299,200,000	29,920,000	29,920,000	29,920,000	29,920,000	29,920,000	29,920,000	29,920,000	89,760,000
84.8249C	104동1호 105동1호 106동1호 107동1호	121	2층	4	68,684,000	200,016,000	268,70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26,870,000	80,610,000
			3~4층	8	68,684,000	208,716,000	277,40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27,740,000	83,220,000
			5~9층	20	68,684,000	217,516,000	286,20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28,620,000	85,860,000
			10~32층	89	68,684,000	223,316,000	292,0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84.8249C	108동2호	28	1층	1	68,684,000	196,516,000	265,200,000	26,520,000	26,520,000	26,520,000	26,520,000	26,520,000	26,520,000	26,520,000	79,560,000
			2층	1	68,684,000	205,516,000	274,20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27,420,000	82,260,000
			3~4층	2	68,684,000	214,416,000	283,10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84,930,000
			5~9층	5	68,684,000	223,316,000	292,0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29,200,000	87,600,000
			10~28층	19	68,684,000	229,316,000	298,0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29,800,000	89,400,000
84.4684D	104동4호 105동4호 106동4호 107동4호	123	1층	1	68,396,000	198,704,000	267,100,000	26,710,000	26,710,000	26,710,000	26,710,000	26,710,000	26,710,000	26,710,000	80,130,000
			2층	4	68,396,000	207,704,000	276,100,000	27,610,000	27,610,000	27,610,000	27,610,000	27,610,000	27,610,000	27,610,000	82,830,000
			3~4층	8	68,396,000	216,704,000	285,10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28,510,000	85,530,000
			5~9층	20	68,396,000	225,704,000	294,10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29,410,000	88,230,000

			10~33층	90	68,396,000	231,704,000	300,100,000	30,010,000	30,010,000	30,010,000	30,010,000	30,010,000	30,010,000	30,010,000	90,030,000
84.8333E	108동1호, 3호	56	1층	1	68,691,000	197,209,000	265,90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26,590,000	79,770,000
			2층	2	68,691,000	206,209,000	274,900,000	27,490,000	27,490,000	27,490,000	27,490,000	27,490,000	27,490,000	27,490,000	82,470,000
			3~4층	4	68,691,000	215,109,000	283,80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28,380,000	85,140,000
			5~9층	10	68,691,000	224,109,000	292,800,000	29,280,000	29,280,000	29,280,000	29,280,000	29,280,000	29,280,000	29,280,000	87,840,000
			10~29층	39	68,691,000	230,109,000	298,80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29,880,000	89,640,000
128.2593	101동1호	1	35층	1	103,854,000	445,946,000	549,80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54,980,000	164,940,000
131.1781	102동,103동1호	2	35층	2	106,218,000	453,582,000	559,80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55,980,000	167,940,000
145.4685	106동,107동1호	2	34층,31층	2	117,790,000	501,610,000	619,400,000	61,940,000	61,940,000	61,940,000	61,940,000	61,940,000	61,940,000	61,940,000	185,820,000
151.0444	104동,105동1호	2	33층	2	122,308,000	517,992,000	640,30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64,030,000	192,090,000
154.8496	108동1호,3호	1	29층	1	125,377,000	531,423,000	656,800,000	65,680,000	65,680,000	65,680,000	65,680,000	65,680,000	65,680,000	65,680,000	197,040,000

1.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2의 규정에 의거 김해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분양가 상한금액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라인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 임.
2. 부대복리시설 및 필로티 등이 있는 동은 해당공간을 포함하여 층 · 호수를 산정 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 · 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 됨.
3.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인지세 포함), 통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므로 추후 본인이 과세 관청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4.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복도,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위 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6.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납부 기준공정 시점 이후 중도금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7.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하고, 잔금은 입주(세대 열쇠불출일) 전에 완납 하여야 함.
8.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9.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4%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 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 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
10. 입주예정일 보다 실입주일이 당겨 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 및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 할 시는 연체료가 부과됨을 수인하여야 함.
11.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
12.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13.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14.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15.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16.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함.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17.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8.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공통사항

•신청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자	시 간	장 소
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신청일시	2014.11.05(수)	10:00 ~ 14:00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 공고	2014.11.05(수)	16:0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0) 현재 김해,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다만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김해시 1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거주,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중 선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5485(2009.12.4)]에 따라 기존의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으로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 · 호수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수 배정결과는 일반 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18조 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업무 중 동 · 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 · 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신청방법**: 해당 청약신청일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을 하셔야 함.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함. 또한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특별공급분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를 제외함], 제5항, 제6항, 제7항, 제13항에 의한 특별 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인정된 금액이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자.(단, 신청 전 신청가능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 당첨자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체결일 : 2014.11.18(화) ~ 11.20(목)(3일간, 각 순위 정당 담첨자 계약체결일 내)

1) 일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 92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추천 및 인정 서류를 받은 자. 단, 해당 기관장의 인정 서류를 받으신 대상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 함.

- 2012년 3월 30일(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 공포 시행에 따라 기관추천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함. 단, 해당 기관장의 인정서류를 받으신 대상자중 최초 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함.
- 대상 기준 및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 입주자저축(청약자격 요건)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만 제외 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93세대/ 건설량의 10%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동일순위 경쟁시 김해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증명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 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함.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2012.04.12)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 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배점을 부여 함.

-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당첨자 대상으로 동·호수 추첨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우선순위 배점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935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배 점 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①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① 또는 ② 하나만 인정
		한부모 가족 ②	5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 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92 세대/ 전용면적 85㎡이하 건설량의 10%이내]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공급 대상자격</td><td>·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혼인 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을 말한다)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동일순위 경쟁시 해당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1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 2013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고시)
<table>
<tr><th>구 분</th><th>3인이하</th><th>4인</th><th>5인이상</th></tr>
<tr><td>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td><td>4,606,216원 이하</td><td>5,102,802원 이하</td><td>5,357,446원 이하</td></tr>
<tr><td>배우자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td><td>5,527,459원 이하</td><td>6,123,362원 이하</td><td>6,428,935원 이하</td></tr>
</table>
</td></tr>
<tr><td>청약 순위</td><td>·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청약순위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td></tr>
<tr><td>동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td><td>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단, 동일순위 경쟁시 김해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3. 미성년인 자녀수가(태아포함) 같은 경우에는 추점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 산정방법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한 자녀.
②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며,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td></tr>
</table>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 주민등록표 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 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함.

※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 됨.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 계약)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 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사전 예약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공고일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 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증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 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 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 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320호〕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28세대/ 건설량의 3%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단, 동일순위 경쟁시 김해시 1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잔여물량 발생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 무주택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기간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함.
- 당첨자 선정방법: 특별공급대상 요건을 갖춘 신청자들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점자 발생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함.(가점점수 산정 기준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준용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이 취소 될 수 있으며 그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특별공급				
	일반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계
59.9612A	7	7	7	2	23
59.9838B	6	6	6	2	20
59.9612C	9	10	9	3	31
59.9130D	3	3	3	1	10
73.8974	10	10	10	3	33
84.6798A	12	12	12	3	39
84.7227B	12	12	12	4	40
84.8249C	15	15	15	4	49
84.4684D	12	12	12	4	40
84.8333E	6	6	6	2	20
128.2593	0	0	0	0	0
131.1781	0	0	0	0	0
145.4685	0	0	0	0	0
151.0444	0	0	0	0	0
154.8496	0	0	0	0	0
계	92	93	92	28	305

6)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일반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 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 인정서만 인정함[장애인카드,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애인은 제외 -단독세대 및 배우자분리세대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 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본, 3세대이상 세대주구성 청약자에 한함) -한부모가족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1통(한부모가족)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 본인 발급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발급기준(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출생일자 확인 필요한 기본증명서 : 자녀발급기준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주민등록등본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및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도지역 거주기간이나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수 없는 경우에 한함)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관련 증빙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청약통장가입(순위)확인서[국민은행(http://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발급]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대리 신청자의 인감도장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0) 해당주택건설지역(김해시)에 거주하거나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순위 경쟁시 김해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에게 우선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시 경상남도(김해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배정함.

■ 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 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주택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신청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및 청약관련예금
민영 주택	1순위	공동	- 85㎡이하: 가점제 40%,추첨제 60% 적용 - 85㎡ 초과: 추첨제 100% 적용
		85㎡ 이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청약부금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3)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 적용
		85㎡ 초과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동일계좌로 청약하는 경우 최초 청약시 선택한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에 신청가능)
	2순위	가점제/추첨제	접수대상 없음
	3순위	전 주택형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 만19세 미만인자 포함.)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 가점제 자격신청은 1, 2순위에만 해당되며, 가점제 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관련 예금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2)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구 분 (전용면적)	e편한세상 봉황역 공급 TYPE	김해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 광역시 거주자
85㎡ 이하	59㎡A, 59㎡B, 59㎡C, 59㎡D, 73㎡ 84㎡A, 84㎡B, 84㎡C, 84㎡D, 84㎡E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5㎡ 초과 ~ 102㎡ 이하	해당 없음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102㎡ 초과 ~ 135㎡ 이하	128㎡, 131㎡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135㎡ 초과	145㎡, 151㎡, 154㎡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부산광역시 600만원, 울산광역시 400만원, 경상남도 및 김해시 300만원) 청약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도 청약신청 가능.

3) 청약 접수기간 및 장소

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특별공급	2014.11.05(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시간 : 10:00~14:00	-당첨자 선정 일시 : 2014.11.05(수) / 16:00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당첨자 선정 시간은 당사 사정에 의해 지연될 수 있음
	1,2순위	2014.11.06(목)	-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t2you.com)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4.11.13(목) / 10: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게재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3순위	2014.11.07(금)	- 3순위 거래은행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보유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보유자 : (www.apt2you.com)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17:30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 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청약 가능시간: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 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청약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4) 청약관련 예금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경과 시마다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 하여야 함.

2. 일반공급

• 층별,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1순위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 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청약자는 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 /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자동분류 접수됨.

구 분(전용면적)	가점제	추첨제
85㎡ 이하	40%	60%
85㎡ 초과	해당 없음	100%

※ 신청자 미달시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공급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 접수함.

3. 청약신청 접수 유의사항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취소 및 정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청약 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하여 주시기 바람.

▣ 청약가점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1, 2순위 85㎡이하는 일반 공급물량의 40%를 가점제로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 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비 고						
본인 청약가점점수 = ① + ② + ③ - ④ 감점 점수(아래 “감점 산정기준” 참고)						

• 감점 산정기준

감 점 항 목			감점점수
구 분	기 준	소유주택수	
1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2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 청약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무주택기간 적용 기준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의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단,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여 세대원인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 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 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 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 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방문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공통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3순위: 주택청약참가은행)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 인감도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 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추가 입증서류 : 동일세대 구성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 다음서류를 추가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3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청약 신청금	비 고
청약 신청금	100만원	·인터넷 청약시(08:00~17:30) :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자동출금(청약신청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영업점 방문청약시(09:00~16:00)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14.11.14(금)]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 - 주민등록증 -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제3자 대리환불시
		제3자 대리환불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은행 본·지점에서 환불 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신청금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창구 청약자 중 접수은행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 환불 신청한 분 및 인터넷 청약자는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해당 계좌(인터넷 청약자는 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됨.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 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특별공급 추첨일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지정은 일반공급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 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공 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2일 이내에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KB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KB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이용기간		2014.11.13(목)~2014.11.22(토) (10 일간)	
인터넷	이용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자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 (ARS)	이용방법	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전화번호	KB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번호 : 9→1→3)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번호 : 5# + 1#)
휴대폰 문자 서비스	대 상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문자 수신에 동의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4.11.13(목) 08:30 [제공시간은 각 은행 및 금융결제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2014년 11월18일(화)~ 2014년11월20일(목) [3일간] 10:0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계약금 납부: 아래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본인명의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시 지참하시거나 계약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
(계약체결장소에서 직원들이 계약금 수납업무를 하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며,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리은행	1005-202-551101	국제자산신탁(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정당 당첨자 (본인 계약체결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및 인감도장 • 계약금(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또는 무통장 입금증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 이혼, 배우자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0)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 장애인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와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통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부적격 통보 받은자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0.30)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 착오 기재 소명자는 3개월간 청약이 제한)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타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소수점 이하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 금액 없음)

■ 동일 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 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음)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실내골프연습장.휘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입주자회의실
▣ 입주자 사전점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 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가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 개시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일
■ 2017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 발표시 동·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	<온돌마루(걸레받이 포함)>거실,주방,침실 <타일,석재>현관,거실,복도 <타일>발코니,실외기실바닥,발코니바닥,발코니 배수구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발코니바닥 방수,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벽	초배지,벽지,벽체도장,장식벽(아트월,타일,시트지,MDF판),주방벽체타일,경량칸막이, 걸레받이	단열+석고보드+미장,발코니벽체도장,건식벽체
천장	초배지,천장지,반자돌림,천장도장,몰딩,MDF판,우물천정 인테리어	천장틀,석고보드,커텐박스,발코니천정도장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	전기배관,전기배선,전기콘센트,전기스위치,매입박스
욕실	욕실바닥/벽체타일(타일시공을위한 미장포함), 천정재,석재(대리석선반),재료분리대,욕조하부틀,코킹,바닥배수구,욕실환풍기,스위치, 콘센트,샤워부스,욕실장,욕실폰,욕조,양변기,세면기,비데,수전류,액세서리류	방수(바닥,벽체),조적,설비배관(급수,급탕등 매립배관), 욕실배기덕트, 바닥배수슬리브,전기배선,전기배관,통신배관,통신배선
주방	주방가구상,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포함),주방벽체타일,주방TV, 주방수전,씽크볼,렌지후드,쿡탑,전기오븐,식기세척기등 주방 가전일체	설비배관(급배수,오수,난방),소방관련시설,전기배관,전기배선, 통신배관,통신배선(주방TV폰 등의 전기입선),주방배기덕트
일반가구	현관신발장,드레스룸장,파우더장,수납선반,화장대,반침가구(침실붙박이장,시스템장)	-
창호	목창호(문틀,상부마감판,문선,문짝,손잡이철물,경첩외하드웨어일체),실외기실플라스틱도어, 디지털도어락	목창호가틀,플라스틱창호내창,현관방화문
기타사항	발코니수전	월패드,각실온도조절기,실내환기조절기,에어컨 냉매배관(해당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원,VAT포함)

주택형 ㎡	기본선택(마이너스 옵션금액)	비고
59.9612A	18,212,151	
59.9838B	18,124,124	
59.9612C	18,095,592	
59.9130D	18,064,450	
73.8974	22,245,944	
84.6798A	25,500,829	
84.7227B	25,321,677	
84.8249C	25,217,159	
84.4684D	25,397,327	
84.8333E	25,281,346	
128.2593	39,033,928	
131.1781	39,740,783	
145.4685	43,969,124	
151.0444	45,457,767	
154.8496	46,627,822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아니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공급금액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급금액 총액에서 상기 마이너스 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유의하셔서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임.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관련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08.10.29개정· 시행)

(단위: 원,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공사비				비 고
	전체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16.05.20	입주시	
59.9612A	5,202,000	1,000,000	1,560,000	2,642,000	
59.9838B	4,887,000	1,000,000	1,460,000	2,427,000	
59.9612C	5,621,000	1,000,000	1,680,000	2,941,000	
59.9130D	7,576,000	1,000,000	2,270,000	4,306,000	
73.8974	5,932,000	1,000,000	1,770,000	3,162,000	
84.6798A	5,502,000	1,000,000	1,650,000	2,852,000	
84.7227B	6,564,000	1,000,000	1,960,000	3,604,000	
84.8249C	6,533,000	1,000,000	1,950,000	3,583,000	
84.4684D	6,528,000	1,000,000	1,950,000	3,578,000	
84.8333E	8,451,000	1,000,000	2,530,000	4,921,000	
128.2593	9,592,000	1,000,000	2,870,000	5,722,000	
131.1781	8,187,000	1,000,000	2,450,000	4,737,000	
145.4685	10,473,000	1,000,000	3,140,000	6,333,000	
151.0444	9,273,000	1,000,000	2,780,000	5,493,000	
154.8496	11,500,000	1,000,000	3,450,000	7,050,000	

■ 발코니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확장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발코니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확장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연접한 세대의 발코니 미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가 일부 돌출될 있고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배수 드레인이 설치되지 아니함.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음.

구 분	금융기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견본주택내 추후 공지		

▣ 추가 선택품목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중도금,잔금),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1. 빌트인 가전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제품명	업체명	판매가	비고
빌트인 냉장고	전 주택형	RS674CHQFSR	삼성	4,83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59㎡A,B,C,D	HBRK265VRS	삼성	1,580,000	
	73㎡ 이상	HBRK265VRS	삼성	1,700,000	
복합오븐	전주택형	EONB420M	동양매직	390,000	

2. 붙박이장류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항목	주택형	판매가	비고
안방붙박이장	73㎡	2,180,000	신명
	84㎡A	3,030,000	신명
	84㎡B	3,030,000	신명
	84㎡C	3,030,000	신명
	84㎡D	3,030,000	신명
	84㎡E	3,030,000	신명
	128㎡	3,390,000	신명
	131㎡	3,390,000	신명
	145㎡	3,390,000	신명
	151㎡	3,030,000	신명
	154㎡	4,000,000	신명
추가 침실2장	59㎡A	1,060,000	신명
	59㎡B	1,060,000	신명
	59㎡C	1,060,000	신명
	59㎡D	1,060,000	신명
	73㎡	1,060,000	신명
	84㎡A	1,060,000	신명
	84㎡B	1,060,000	신명
	84㎡C	1,060,000	신명
	84㎡D	1,280,000	신명
	84㎡E	1,060,000	신명
	128㎡	1,410,000	침실붙박이장/확장시 불적용/침실1 옵션
	131㎡	-	침실붙박이장/확장시 2개소 적용
	145㎡	1,410,000	침실1붙박이장/확장시 1개소 적용/침실2옵션
	151㎡	1,640,000	침실1붙박이장/확장시 1개소 적용/침실2옵션
	154㎡	1,640,000	침실1붙박이장/확장시 1개소 적용/침실2옵션

3. 시스템에어컨

(단위:㎡,원,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위치	업체명	판매가
59㎡A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4,900,000
			삼성전자	5,1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500,000
			삼성전자	7,000,000
59㎡B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100,000
			삼성전자	5,4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900,000
			삼성전자	7,400,000
59㎡C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4,900,000
			삼성전자	5,1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500,000
			삼성전자	7,000,000
59㎡D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100,000
			삼성전자	5,4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900,000
			삼성전자	7,400,000
73㎡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100,000
			삼성전자	5,3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600,000
			삼성전자	7,100,000
84㎡A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200,000
			삼성전자	5,4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700,000
			삼성전자	7,200,000
84㎡B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300,000
			삼성전자	5,5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800,000
			삼성전자	7,300,000
84㎡C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200,000
			삼성전자	5,4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700,000
			삼성전자	7,200,000
84㎡D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300,000
			삼성전자	5,5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800,000
			삼성전자	7,300,000
84㎡E	ATL-1	거실+침실1+침실2	LG전자	5,300,000
			삼성전자	5,500,000
	ATL-2	거실+침실1+침실2+침실3	LG전자	6,800,000
			삼성전자	7,300,000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할 수 있음.

▣ 추가선택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대금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단,추후(계약전 등) 가상계좌(동호수마다 다름)를 안내 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본인 가상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 공급계약서에 준함

구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공사비	견본주택내 추후 공지		

※상기 입금계좌는 향후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계약시 별도 안내함)에서 상기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세대별 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기타 유의사항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입주자로 선정(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을 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및 견본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의 고저차 등은 실물 확인시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보일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주변건물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해 현재와 다르게 조망, 일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업과 무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구청에 문의 바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주변도로와 인접한 세대는 도로소음 및 야간에 가로등, 차량 등으로 인해 취침에 방해를 받을 수 있음
■ 보행자 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 저층세대 및 일부세대의 경우 향, 배치에 따라 일조가 충분하지 않거나 불리할 수 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의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으로 인한 실, 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마감 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 범위내에서 경미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사업계획인승인도, 착공도, 실시도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당사에서는 별도의 알선 또는 업체의 선정 등을 하지 않으니 개별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바람[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샤시, 부동산 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교통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견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반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함.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평면 및 형별 특성에 따라 비확장 발코니 등에 청소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경로당의 시설 및 기기는 추후 운영주체에서 별도 구비한다.)
■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함.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 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람.
■ 단지 내 계획된 어린이 놀이터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기초 형식변경 포함) 및 성능부분에 대하여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외부시설물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거목적으로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 토지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거한 토지취득신고 및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다) 영리목적으로 국내 법인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당 사업지 인근에 남해고속도로, 국도, 부산김해경전철, 해반천, 전하오수중계펌프장(아파트104동 남측, 중로2-1 맞은편)으로 인한 소음 및 위해가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VAT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소 방/통 신
회 사 명	(주)신동아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현대공영주식회사
감리금액	₩2,749,439,000	₩637,393,756	₩371,8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원가공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 함.
- 아파트 단지 분양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 함.

•분양가격 공시내용

(단위: 원,VAT포함)

항 목	공 종	금 액	비 고
택비지	택지공급가격	46,600,278,791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11,919,712,209	필요적 경비 등 그 밖의 비용
계		58,519,991,000	
공사비	토목	10,625,818,000	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 토목공사비
	건축	81,751,181,000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등 건축 공사비
	기계설비	11,695,377,000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등 기계설비 공사비
	그 밖의 공종	13,921,958,000	전기, 소방설비 등 그 밖의 공종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31,778,598,826	일반관리비 및 이윤
계		149,772,932,826	
간접비	설계비	2,015,316,939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설계에 관한 비용
	감리비	3,758,632,756	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되는 감리에 관한 비용
	부대비	26,790,000,000	분양관련 비용, 수도, 가스, 전기시설 인입비용, 건물보존 등기비 등을 합한 비용
계		32,563,949,695	
그 밖의 비용		13,473,926,479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합 계		254,330,800,000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내용 및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내용 (단위 : 원)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	178,031,560,000	제01282014-101-0012300호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의 정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공동사업주체.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수탁사)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07-81-85459)
▣ 시 공 사 : 고려개발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06-81-44682). 대림산업 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 116-81-35007)
▣ 위 탁 사 : 삼우개발(주) (사업자등록번호 : 209-81-57851)
▣ 견본주택 위치 : 경남 김해시 봉황동 33
▣ 사이버견본주택 : http://www.kdc-apt.co.kr
▣ 분양문의: ☎ 055)324-5800

※ 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